##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10 발의연월일: 2025. 2. 25.

찬 성 자:이원택・김한규・이용우

임미애 · 주철현 · 윤준병

임호선 · 위성곤 · 이병진

어기구 · 송옥주 · 서삼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거나 농산물 과잉생산 시에는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식량주권 등과도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농산물 수출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산물 생산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농산물무역정 책심의회로 변경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를 위원 으로 명시하는 등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① 농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둔다.

- 1.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 2. 농산물 관세제도 기본방향
- 3. 세계무역기구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향
- 4. 수입제한 농산물의 연도별 수입계획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관계 공무원
-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 3. 학계 및 농수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 ③ 그 밖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① 농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 적으로 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에 농산물무역정책 심의회를 둔다. 1.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 향 2. 농산물 관세제도 기본방향 3. 세계무역기구 농산물 이행계 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향 4. 수입제한 농산물의 연도별 수입계획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로 구성한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 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 3. 학계 및 농수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 ③ 그 밖에 농산물무역정책심 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